

# 1 학생준칙

## 제 1 장 목 적

**제 1 조 (목적)** 학생준칙은 호서대학교 학칙에 따라 학생들이 학내·외의 생활을 통하여 지켜 나아가야 할 일상 생활규범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장 학생증

**제 2 조 (학생증 발급)** 신입생은 입학절차를 완료하는 즉시 학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 3 조 (학생증 휴대)** ① 학생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항상 학생증을 휴대하고 본 대학교 교직원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학생증을 휴대하지 아니한 자는 수강, 시험 또는 도서관 입장 및 제선거의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제 4 조 (대여금지)** 학생증은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제 5 조 (재교부)** 학생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기하여 발급부서에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6 조 <삭제>**

## 제 3 장 학생단체 및 학생활동

**제 7 조 (학생활동)** 학생은 학풍을 진작하고 학문을 탐구하며 인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생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제7조의 2(건전한 집단활동)** 학생단체는 모든 활동에서 안전부주의 및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6. 9. 1.)

① 집단활동 시 안전사고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사전 매뉴얼을 작성하고 이를 지도교수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신설 2016. 9. 1)

② 학생단체는 학교로부터 안전부주의 및 인권침해에 대한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6. 9. 1)

[본조신설 2016. 9. 1]

**제 8 조 (간부자격)** ① 총학생회 총부학생회장, 단과대학 학생회장(부회장), 학부·과(전공) 학회장 및 각 자치기구의 장이 될 수 있는 자는 5학기 이상 6학기 이내 등록을 필하고 평점 평균이 2.5/4.5이상 이여야 한다. 단, 대학의 학사개편 등에 의해 조직(신설)된 단과대학 등의 경우 3학기 이상 등

록자도 학생회장(부회장)이 될 수 있다.(개정 2015. 1. 26, 2017. 9. 1)

②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징계에 회부되어 있는 자는 간부가 될 수 없다.(신설 2017. 9. 1)

**제9조 (활동제한)** 총장은 학생 개인 및 단체의 불건전한 활동이 대학의 기능을 저해하고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금지시킬 수 있다.

**제10조 (단체등록)** 학생단체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년 초 지정된 기간 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학생팀에 제출, 신고함으로써 학생단체로 인정된다.(개정 2016. 5. 4)

- ① 학생단체 등록 신청서 1부(학생단체서식 1호) (개정 2015. 1. 26)
- ② 지도교수 지도(취임) 승인서 1부(학생단체서식 2호) (개정 2015. 1. 26)
- ③ 단체규약 및 회칙 1부(소정양식)
- ④ 단체원 명부 및 서약서 1부(학생단체서식 3호) (개정 2015. 1. 26)
- ⑤ 연간(학기별) 활동계획서(학생단체서식 4호) 및 전년도 실적(재등록 시) 보고서 1부(학생단체서식 5호) (개정 2015. 1. 26)

**제11조 (갱신발급)** ① 학생단체의 존속기간은 등록된 당해 연도에 국한한다.

② 계속 활동을 원하는 학생단체는 제10조의 규정에 준하여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학생단체의 전년도 실적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등록갱신이 없는 학생단체는 당해 연도의 종료와 함께 해산한 것으로 본다. (학생단체서식 5호) (개정 2015. 1. 26)

**제12조 (집회신고 및 허가)** 학생 또는 학생단체가 집회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양식에 의하여 행사 7일 전에 학생처에 신고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학생단체서식 6호) (개정 2015. 1. 26)

**제13조 (게시물)** 학생이 개인 또는 단체의 명으로 광고를 게시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처에 신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학생단체서식 7호) (개정 2015. 1. 26)

**제14조 (간행물)** 학생 또는 학생단체가 발간하는 정기, 부정기의 간행물은 지도교수의 승인을 득한 후 학생처에 신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학생단체서식 8호) (개정 2015. 1. 26)

**제15조 (야간시설물 이용)** 교내 학생단체 관련 시설의 사용 시간은 20:00 까지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부서에 사전 신고, 승인 후 사용 할 수 있다.

**제16조 (경기참가)** ① 학생 또는 학생단체가 대외 운동경기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학생은 총장의 승인 없이 타 단체의 운동선수가 되지 못한다.

## 제 4 장 출석 및 유고결석

**제17조 (수업)** 학생은 매 수업시간에 출석하여야 하며, 최소한 총 강의시간수의 3분의 2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제18조 (단체행사 및 채플)** 단체행사 및 채플 출석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제19조 (유고결석)** ①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하는 학생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에 결석계를 학과·학부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유고결석은 다음 각호의 사유와 기간에 국한하여 인정된다.

1. 병사관계로 인한 결석 ----- 3일 이내
2. 직계존비속의 사망으로 인한 결석 ----- 5일 이내
3. 학교대표로 참석한 각종 교육, 연수, 훈련으로 인한 결석 ----- 동 기간
4. 기타 학생처장이 인정하는 학내의 행사로 인한 결석 ----- 행사기간

## 제 5 장 포상 및 징계

**제20조 (포상)** ① 학생으로 학내·외를 막론하고 선행을 하였을 때에는 학생상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사장, 총장, 학장으로부터 포상을 받을 수 있다.

② 포상은 학업우수상, 공로상, 문화상, 체육상, 모범상 등으로 한다.

1. 학업우수상 : 재학 4년간 학업성적이 전교에서 최우수한 자와 각 대학에서 최우수한 자
2. 공 로 상 : 사상이 건전하고 지도능력이 탁월하여 학교발전에 기여하고 학생자치활동에 공로가 현저한 자
3. 문 화 상 : 문화부문에 우수하고 창의적 업적을 나타내어 학교의 명예를 높인 자
4. 체 육 상 : 체육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거나 체육을 통하여 학교의 명예를 높인 자
5. 모 범 상 : 교내·외에서 타 학생에게 모범이 될 선행을 하여 학교의 명예를 높인 자

③ 학생준칙 제5장 포상 및 징계 제21조(포상) ②항 중 3(문화상), 4(체육상)호에 해당하는 학생 중 1(포상금 지급 대상)호에 해당할 때 포상금을 지급한다.

1. 포상금 지급 대상

가. 전공 관련 우수자 포상 : 전공 능력이 뛰어난 학생으로 해당 전공교수가 추천한 학생

가) 전국규모 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자.

ㄱ) 경진대회 입상자

ㄴ) 학술대회 발표 및 논문게재, 공모전 수상자

나. 동아리 활동 우수자 포상 : 동아리 활동 능력이 뛰어난 학생으로 해당 지도교수가 추천한 학생

가) 전국규모 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자.

ㄱ) 경진대회 입상자

ㄴ) 대한체육협회 및 생활체육협회 가맹단체가 주관하는 대회 입상자

다. 체육활동 우수자 포상 : 체육활동능력이 우수한 학생으로 해당 지도교수가 추천한 학생

가) 본교 재학생으로 운동부에 등록된 학생 중 대한체육회 가맹단체가 주최하는 전국규모 대회의 당해연도 입상한 학생. (단, 체육특기자 학생은 현재 시행(2. 장학규정 제3장 장학금 지급 제8조(장학금) ⑥항)되고 있으므로 제외함.)

2. 기간 : 대회참가 시기는 직전학기 장학금 신청 마감 다음 날부터 해당 학기 장학금 신청 마감일까지. (단, 복학생의 경우 복학학기 시작일부터 6개월전까지 취득결과만 인정함.)

3. 포상등급은 1등급 국제규모 입상, 2등급 전국규모대회 1등, 3등급은 전국규모대회 2, 3등으로 구분하여 포상금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1조 (징계)** 학생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대학별 교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한다. 다만, 사안이 중요할 경우에는 학생상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개정 2016. 9. 1, 2017. 9. 1)

1. 근신에 해당하는 행위

- 가. 교수실 및 사무실 출입 시 결례한 자
- 나. 신학전공 재학생으로서 신학전공 준칙(금주, 금연)을 위반한 자
- 다. 비신사적인 행위 또는 학생신분에 벗어난 행위를 한 자
- 라. 교내 게시물을 무단 제거한 자
- 마. 허가 없이 인쇄물, 간행물을 게시하거나 발간한 자
- 바. 기타 상기 각호에 준하는 행동을 한 자
- 사.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 성과 관련하여 성문란 행위를 한 자 (신설 2015. 1. 26)
- 아. 집단활동에서 인권침해 행위를 한 자 (신설 2016. 9. 1.)

2. 유기정학에 해당하는 행위

- 가. 제1호의 행위를 재범한 자
- 나. 음주를 하고 학내에서 학생의 신분에 벗어난 행위를 한 자
- 다. 학업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
- 라. 학생 상호간 싸움을 하거나 구타한 자
- 마. 교내에서 금전놀이(사행) 행위를 한 자
- 바. 타인의 금품 및 물품을 갈취 또는 절취한 자
- 사. 허가 없이 단체를 조직하거나 정치활동을 한 자
- 아. 기타 상기 각호에 준하는 행동을 한 자
- 자. 성문란 행위를 고의로 범하는 자 (신설 2015. 1. 26)
- 차. 집단활동에서 인권침해 행위를 고의로 한 자 (신설 2016. 9. 1.)

3. 무기정학에 해당하는 행위

- 가. 제2호의 행위를 재범한 자
- 나.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를 거부한 자
- 다. 학교질서를 고의로 문란하게 한 자
- 라. 고의로 학교시설 및 재산을 파손 또는 절취한 자
- 마. 허위 공문서 작성 및 위조한 자
- 바. 기타 상기 각호에 준하는 행동을 한 자
- 사. 성과 관련하여 학교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신설 2015. 1. 26)

아. 집단활동에서 인권침해 행위로 학교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신설 2016. 9. 1.)

4. 퇴학에 해당하는 행위

가. 제3호의 행위를 재범한 자

나. 집단적 행위로 학사행정 및 수업을 고의로 방해한 자

다. 교직원에게 반항하여 그의 위신을 심히 손상시킨 자

라. 교내외에서 학교 명예를 훼손한 자

마.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바. 기타 상기 각호에 준하는 행동을 한 자

사. 성과 관련하여 행위의 정도가 높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자 (신설 2015. 1. 26)

아. 집단활동에서 인권침해 행위를 하여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자 (신설 2016. 9. 1.)

**제22조 (징계의 구분)**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정상에 따라 다음에 의하여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의 처분을 받는다.

1. 근신기간은 3일 이상 1개월 이내로 하고 근신중인 학생은 학내의 생활을 통하여 과오를 반성하여야 하며 학내 과외활동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정학은 유기와 무기로 구분하며, 유기정학은 1개월 이내, 무기정학은 1개월 이상으로 한다.

**제23조 (권리의 정지 및 특별지도)** ① 퇴학이외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징계기간 중 학과·학부교수 및 학과·학부장의 특별지도를 받으면서 일정기간 반성문을 제출해야 한다.

② 근신 처벌을 받았을 경우에는 수업이외의 모든 학생활동의 참여가 금지된다.

③ 근신 이외의 징계처벌을 받은 학생은 처벌을 받은 날로부터 해제되는 날까지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는 상실된다.

**제24조 (징계의 해제)** 해당 학과·학부장이 무기정학중인 학생에 대한 특별지도 결과보고서(학생징계서식 1호)와 징계해제 의견서(학생징계서식 2호)를 소속 학장에게 제출하면 소속 학장은 학생상벌위원회에 회부하고 학생상벌위원회는 심의하여 징계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6)

**제25조 (통보)** 상벌위원회는 비공개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생처장은 징계사실을 관계 부서와 학부모 및 본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제26조 (징계의 감면)** 총장은 징계대상자 또는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징계를 감면할 수 있다.

## 제 6 장 학생상벌위원회

**제27조 (목적)** 학생지도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과 학생상벌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학생상벌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제28조 (구성)**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사부총장이, 부위원장은 학생처장이 겸임하며 위원은 교무처장, 각 단과대학 학장 및 해당 학과 학과장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학생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 1.

26, 2015. 5. 1)

**제29조 (소집 및 정족수)** 본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30조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의 지도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 본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31조 (위원장의 권한)** 위원장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괄한다.
2. 위원장의 유고시나 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부 칙

이 준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